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명재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21621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9. 7. 24.

발의자 : 박명재 · 문진국 · 임이자
황영철 · 엄용수 · 김동철
정성호 · 박덕흠 · 장제원
권성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 시설의 정비·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한편,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동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(비밀유지)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임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

임(안 제56조제5항 신설).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납세자의 인적사항
2.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
3.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56조(과징금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| <p>제56조(과징금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납세자의 인적사항</u></p> <p><u>2.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</u></p> <p><u>3.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</u></p> |